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自動車讓渡証明書(讓渡人・讓受人の直接取引用)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자 受付日	
갑 甲 (양도인) (讓渡人)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법인)등록번호 住民(法人)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주소 住所	
을 乙 (양수인) (讓受人)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법인)등록번호 住民(法人)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주소 住所	
거래 내용 取引内容	자동차등록번호 自動車登録番号	차종 및 차명 車種と車名
	차대번호 車台番号	매매일 売買日
	매매금액 売買金額	잔금지급일 残金の支払日
	자동차인도일 自動車引渡日	주행거리 走行距離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第1条(当事者の表示) 讓渡人を「甲」といい、讓受人を「乙」という。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第2条(同時履行など) 「甲」は、残金の受領と引換えに、自動車と所有権の移転登録に必要な書類を「乙」に引き渡す。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第3条(公課金の負担) この自動車に対する公課金は、自動車引渡日を基準にして、その基準日までの分は、「甲」が負担し、基準日の翌日からの分「乙」が負担する。ただし、関係法令に租税公課の納付について特別な規定がある場合は、それに従うものとする。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第4条(事故の責任) 「乙」は、この自動車を引き受けたときから発生するすべての事故について、自己のために運行する者としての責任を負う。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第5条(法律上の欠陥の責任) 自動車引渡日以前に発生した行政処分または以前の登録要件の不備、その他管理の瑕疵については、「甲」がその責任を負う。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第6条(登録遅滞の責任) 「乙」が売買目的物を引き受けた後、定められた期間無いに移転登録をしなかった場合には、これに対するすべての責任は「乙」が負う。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第7条(割賦の承継に関する特約) 「甲」が車を分割払いで購入して割賦金を完済していない状態で「乙」に讓渡した場合には、残りの割賦金を「乙」の承継負担有無を特約事項欄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第8条(讓渡証明書) この讓渡証明書は、2通を作成し、「甲」と「乙」が各1通を保有し、「乙」は、この証明書を、所有権の移転登録申請を行うとき(残金支払日から15日以内)に登録官庁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특약사항: 特約事項: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本人は、自動車売買事業者の仲介を通さず讓受人との直接取引で所有車を讓渡し、その事実を証明するために、「自動車登録規則」第33条第2項第1号の規定により、この讓渡証明書を作成して発行します。

년 年 월 月 일 日

양도인
讓渡人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捺印)

양수인
讓受人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捺印)

수입인지 収入印紙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認知税法」による
(裏面の余白に貼付)

유의사항 注意事項

-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讓渡人の注意事項 : この讓渡證明書の作成の際、讓受人の個人情報を記載しないと讓受人の無断転売などで不測の損害を被ることがあるため、必ず讓受人の個人情報を書いてください。
-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讓受人の注意事項 : この讓渡證明書の作成の際、この車両に対して課された自動車税と租税公課金の納付、差し押さえや抵当権等の登録有無を確認して、不測の損害を被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 공통사항 :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共通事項 : この当事者取引用讓渡證明書は、直接取引当事者以外の者(自動車売買業者を含む)が使用すると、自動車管理法に基づいて処罰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正当な事由なく走行距離を変更した者は、「自動車管理法」第71条第2項及び第79条第5号の規定により懲役又は罰金に処せられます。
-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털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自動車の整備、検査、走行距離の履歴、自動車税納付状況や押収内訳など自動車トータル履歴情報は、国土交通省が提供する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マイカ情報」)、または「自動車苦情対国民ポータル(www.ecar.go.kr)」で確認できます。
-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讓渡人が署名した場合には、本人署名事実確認書または電子本人署名確認書の発行書を、讓渡人が署名した場合には、印鑑證明書を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